

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3.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95호로 2017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2011년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 삭제(안 제9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 등 삭제(안 제12조, 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5호 서식)

다.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인상(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제80조(과태료)
-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12. 29. ~ 2017. 1. 1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법제처의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1)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함.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2)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일련의 집행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3)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7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ℓ 기준 14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청소 수수료는 21,140원에서 22,300원으로, 초과분은 100ℓ 당 1,490원에서 1,620원으로 인상함.

-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유류비, 물가 등이 인상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조정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1.1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칩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 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7.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 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7.16.>